

제302회 정례회
2011. 7. 14(목)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임헌경 의원외 6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1년 7월 4일

○ 회부일자 : 2011년 7월 7일

3. 제안이유

-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 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가. 인용조문 정리 (안 제1조)

1) 도로법 제43조 → 도로법 제41조

2) 위임 근거인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추가

나.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 조항 정리 (안 제2조, 제3조)

다. 점용료조정산식은 「도로법 시행령」 제44조의 점용료조정산식을 적용 (안 제4조)

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 (현행 조례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 하려는 것으로써.
-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